

제9장 금융서비스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공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다.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3.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2조 내국민 대우

1.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¹
2.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¹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1.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이행된 분야에서,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²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9.4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인 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5조 건전성 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12장(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² 이 호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투입 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9.6조 투명성³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8.1조(공표)의 제2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질의를 접수하기 위한 적절한 채널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6.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7.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³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국내 법적 요건을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에서 약속된 투명성 조의 약속을 인정한다.

8.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9.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 도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9.7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⁴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9.8조 건전성 조치의 인정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을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9.9조 구체적 약속⁵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고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고, 소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중국의 경우, 고액지급제도 및 일괄전자지급제도는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제공된다.

⁵ 이 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 및 제9.3조와 관련된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다.

부속서 9-가는 각 당사국에 의한 특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9.10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속서 9-가의 제2항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9.11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9-가 제2항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9.12조 분쟁해결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다.

제9.13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 협의

금융기관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9.5조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 협의하고 청구가 제기된 후 18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제9.14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사. 금융리스
 -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자. 보증 및 약정
 -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증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 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의 규정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1)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 2)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 3)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체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 4)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란 정부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으로,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9-가 구체적 약속

1.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자 간 협의, 또는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가. 중국의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중국인민은행(PBOC)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정부 지원 정책 이행 기관

양 당사국은 정부 지원 정책 이행 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호혜적 대우

- 가. 양 당사국은, 건전성 요건을 조건으로 그리고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운영이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규정한 관련 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양 당사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